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698호
- 나. 제 안 자 : 박강산 의원 (찬성자 9명)
- 다. 제 안 일 : 2025. 5. 20.
- 라. 회 부 일 : 2025. 5. 29.

2. 제안이유

-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지역사회 보건·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고립청년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립청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 관리(안 제7조제1항)
- 나. 정신건강 분야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안 제7조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5. 6. 3. ~ 6. 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립·은둔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를 의무화하며(안 제7조제1항),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안 제7조제3항 신설) 고립청년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제7조(실태조사 등) ① _____ _____ — 실시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

나. 검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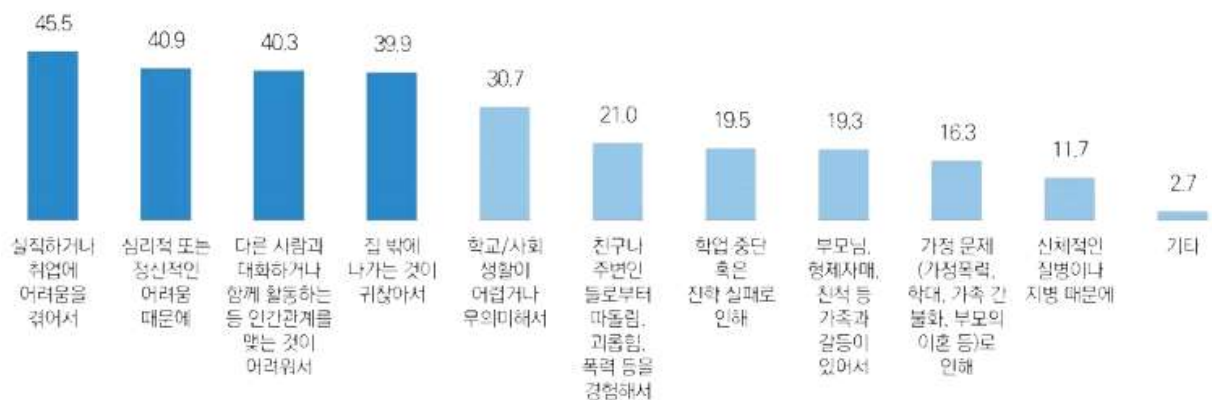
(1) 개정의 필요성

- '22년 실시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¹⁾에 따르면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청년이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1)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2023. 1. 19., 조사기간 : 2022. 5. ~ 12, 서울특별시

되는 주요 원인(2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고립·은둔 청년은 비은둔 청년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²⁾. '23년 실시된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³⁾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청년의 63.7%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4명 중 3명(75.4%)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조사되는 등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마음건강 문제는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하겠음

□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



출처 :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하여 '서울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서울형 정원처방-정원치유 프로그램' 등과 기존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정신건강 지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청년의 은둔이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원빈, 문의정, 2024.12. 가정과삶의질연구 제42권 제4호
 3) 2023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2023. 12. 13. 조사기간 : 2023. 5. ~ 11., 보건복지부

〈 사회적 고립청년 정신건강 관련 서울시 정책 추진현황 〉

구 분	추진 내용	비고
서울형 정원처방	트레킹, 아로마테라피, 트리클라이밍 등 정원치유 프로그램 지원	서울시 정책연계
마음돌봄 프로그램	유기동물 동반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지원	서울시 정책연계
1:1 심리상담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연계 상담 지원	서울시 정책연계
	참여자 중 심리적 위기군 1:1 심층 심리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사회적 상황에서 수행불안 해소	
	대인관계 트라우마 해소 및 신체반응 안정화	
	심리극(트라우마 경험 재구조화)를 통한 트라우마 해소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 교육, 생명존중 지킴이 교육	
중독 교육	회피 경향성에 대한 이해 및 극복	

출처 : 미래청년기획관 제출 자료

(2)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통계정보 수집·관리·활용(안 제7조제1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더하여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각종 연구와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정신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그 중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현 행 조 례	일 부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	제7조(실태조사 등) ① _____	제7조(실태조사 등) ① _____

현행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의견
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 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_____ 실시하고 _____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여 _____ 정책 수립에 활용 _____.	_____ 경제 _____ 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 등 _____ 실시 _____ 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관 _____ 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_____ _____.

(3)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3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임
-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적·심리적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서울시에서는 현행 조례 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를 근거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관련 서울시 민관협력체계 구축현황>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특별시기술연구원,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광역청년센터, 서울청년센터,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시자립청년전담기관,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서울시청년마음건강센터 ,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기업계	신한카드, 신세계센트럴, 신한은행(땡겨요사업단), 먹깨비, 지오코칭, 대교에듀캠프
교육계	고려대학교 마음건강연구소 , 한성대학교, 연세대학교 뇌전증연구소
의료계	한국건강관리협회,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구 분	기 관 명
민간단체	청년재단, NC문화재단, 모두의예체능, 아이들과미래재단, 한국YWCA연합회, 태화샘 솟는집 , 태화해뜨는샘 ,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 한국애니어드라마연구원, 안무서운 회사,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사)씨즈, (사)지엘청소년연구재단,

출처 : 미래청년기획관 제출 자료,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굵은글씨, 밑줄 표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은 현행 조례 제12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조문 신설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7조보다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에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조문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조 례	일 부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7조(실태조사 등) <u><신 설></u>	제7조(실태조사 등) <u>③ 시장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	제7조(실태조사 등) (→ 제12조로 이동)
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현 행 조 례	일 부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신 설>		② 시장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고립·은둔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고립·은둔청년의 63.7%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고, 75.4%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각종 통계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활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보다 효과적인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 안 제7조제1항의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범위에 “정신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 안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 제12조로 옮겨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